

■ 기관추천 특별공급 \_ 규칙 제36조(전용면적 85㎡이하 대상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구분	74A	74B	84A	84B	99	계
총 세대수	224	24	144	75	377	844
배정 세대수	22	2	14	7	-	45

구분	내용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청약통장 유(6개월 / 예외있음) /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및 선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청약통장	주택형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1. 청약 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 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추천기관	장애인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철거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복합 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청약방법	해당기관에 추천을 받은 후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원칙)					
유의사항	㉠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 특별공급 청약일에 미접수시 당첨자선정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청약통장없이 청약 가능 ㉢ 장기복무군인 지역제한 無[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b>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선정</b> ※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등·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세대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인허가·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해당 공급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합니다.